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51 호

2000 년 11 월 3 일 금 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20호(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 3
처리규칙등중개정규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21호(인천광역시남동구모범공무) 5
원포상운영규칙중개정규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22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 6
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23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 8
징수규칙등중개정규칙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59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 9
원외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60호(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 12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등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1. 3.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2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등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제23조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중개정규칙) 제2조2항의2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3조1항중 “분임징수관-경영재정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을 “분임징수관-허가재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하고, “분임경리관-경영재정과장”을 “분임경리관-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1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2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18조1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19조2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1항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3조2항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5조1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26조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7조2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30조1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조2항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47조1항,2항,3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48조1항,2항,3항,4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49조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59조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68조2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93조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120조1항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2항중 “경영재정과장, 징수과장”을 “허가재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122조1항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23조1항,2항중 “경영재정과”를 “허가재무과”로 한다.

제130조1항,2항중 “경영재정과”를 “허가재무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제2조1항의1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2조2항의1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제18조1항중 “징수과장”, “지적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7조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3조2항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1. 3.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21호

인천광역시남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선발)중 “20명”을 “2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1. 3.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2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관련 “별지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은 닻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공시 지가	현소유자(점유)		비고
					주소	성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서류 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성명 :

남 동 구 청 장 귀하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와징수규칙등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1. 3.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2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와징수규칙등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와징수규칙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와징수규칙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와징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를 삭제한다.

제4조(납세의 고지)제1항중 “출장소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징수결정액통지서)제1항중 “동별”란을 삭제하고 제2항중 “다음의”를
“징수결정액통지서의 난외 또는 이면에 개인별내역을 기재하였을”로 한다.

제2항중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징수금의 수납)제1항중 “출장소 또는 동”을 삭제하고 제2항중 “출장소
장 또는 동장의”를 삭제한다.

제13조(공시송달방법)중 “출장소장 또는 동장”을 삭제한다.

제22조(수납부작성)제1항중 “출장소장,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징수유예)중 “동장을 경유”를 삭제한다.

제67조(압류해제의 통지)제4항중 “동장”을 삭제한다.

제104조(공용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신청 및 통지)제1항중 “동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제2항중 “동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제3항중 “또는
동장은”을 삭제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수입부와공개에관한규칙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
지방수입부와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공개등의 방법)제1항중 “동에”를 “구”로 하고 제3항중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의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1. 3.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5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의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의정수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수책정)중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를 삭제하고, 동조 “별표4, 5”를 “별표3,4”로 하고, “별표3,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에 두는 일용인부

구 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역
합 계		280	
단 순 노 무	시설 인부	32	- 펌프장관리2, - 지하차도관리4 - 가로등관리1, - 공원관리4 - 영양사1 - 통신팩스요원1 - 재활용 선별요원 19
	기술 인부	14	- 간호사,임상병리사등12 - 운전1, - 자료정리(사진축소)요원1
도로 보수원		6	- 도로보수관리인부6
청소 인부		205	- 도로환경미화원147 - 재활용수거원 58
청원 경찰		23	- 청사 경비23

별표 2

구본청에 두는 일용인부

구 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역
합 계	265	
기획감사실	1	- 통신팩스요원1
총 무 과	25	-영양사1, 청원경찰23, 운전1
민원지적과	1	-자료정리(사진축소)요원1
청 소 과	224	-청소인부224(도로환경미화원147,재활용선별원 19,재활용수거원58)
도시정비과	1	-시설관리인부1(공원관리)
건 설 과	13	-도로보수관리인부6 -시설관리인부7(펌프장관리2,지하차도관리4, 가로등관리1)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일용인부

구 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역
합 계	12	
보 건 소	12	- 기술인부12(건강관리센터5, 검사실3, 물리치료실1, 진료실2, 방사선실1)

별표 4

출장소에 두는 일용인부

구 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역
합 계	3	
출 장 소	3	- 시설인부3(공원관리3)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1. 3.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6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구청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생활보호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